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21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박덕흠 · 서천호 · 구자근

김대식 · 김정재 · 서지영

윤한홍 · 강대식 · 최수진

조지연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발생 시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로 인명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동물의 구조, 이송, 임시 보호조치가 체계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의 정서와 실제 재난 대응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보호 대상에 해당

하는 동물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재난 시 동물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 ----- ----- -----

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 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u> ② ~ ④ (현행과 같음)
---	---